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39회 임시회
2015. 4. 3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1

2015. 4. 30.(목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1일

(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

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8조)

- 행정부지사 →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○ 공동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15조)

- 행정부지사 →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○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삭제(안 제26조)

○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제3조,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

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”을 “이 조례는”으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2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서면에 의하여”를 “서면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“요청일로부터”를 “요청날부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8조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”로, 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9조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59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5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인이상 14인이하”를 “5명 이상 14명 이하”로,

“2이상의”를 “2개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본문 중 “요청이 있는”을 “요청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15조에 따라”로, 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후단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한 이”를 “없으면 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”를 “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”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	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
제1조(목적)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시행에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3조(공청회 추진기구 등)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공청회 추진기구 등)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--------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8조(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농정국장, 균형건설국장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8조(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----- -----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장의 직무대행) ①·② (생 략)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	제11조(위원장의 직무대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과- ---------- ----------

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----------.
제12조(회의운영) ① ~ ⑤ (생략)	제12조(회의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 서면으로-----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·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,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⑧ ---------- 요청날부터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.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---------- ----------.
1. 제1분과위원회 :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(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	1. ---------- 법 제8조제3항에 따른-------- ---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

우에 한한다),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	---------- 법 제9조에 따른------- ---------- 법 제59조에 따른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: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	3. ---------- 법 제50조에 따른-------- ----------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4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	② ---------- 5명 이상 14명 이하---------- 2개 이상 ----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공동위원회) ①·② (생략)	제15조(공동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	③ ----------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(생 략)	제17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없을 때에는 ----------.
제19조(회의록) ① (생 략)	제19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. 다만,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요청을 받은 ----------. ----------.
제20조(수당 및 여비)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수당 및 여비) ① 법 제115조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	제21조(설치 및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단은 기획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.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아니하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않은-

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.	----------.
제24조(자료의 요구 등) ① (생략)	제24조(자료의 요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- 없을 때에는 ----------.
제25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(도시계획의 결정)을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	제25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.
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.	② ---------- ----- 없으면 이----------.
③ 시장·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----------.
제26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·징수규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	<삭 제>